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시설용지(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다음과 같이 처분(매각)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수)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처분대상 용지

용 도	업 체 명	처분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가격(원)
산업시설구역 (공장용지)	㈜백*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76-1번지	대 지: 18,129.3㎡ 건축물: 4,211.12㎡	7,300,000,00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5항에 따른 양도가격

가. 처분가격 : ₩7,300,000,000(금 칠십삼억원 정)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

*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하나, 매매계약 및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3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 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매각용지의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제한업종

가. 산업집적법 제2조 및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9호(2026.4.13))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나. 우선 유치대상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 승인된 기업

○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다. 입주제한

○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 법령 확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2014-11-28), 지구단위계획구역(2014-11-28), 중로1류(폭20m~25m)(2014-11-28)(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6-15)(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2020-11-1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도금 및 도장업종([붙임2]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참조)

○ 산업집적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3. 처분(매각) 절차

처분신청 (처분신청자) ⇒ 매각공고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매수자 선정 및 처분 통보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매매계약 체결(매도자↔매수자) 입주계약체결(매수자↔관리기관)

4. 처분(매각)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처분공고 및 서류 접수	'26. 11. 18..(수) ~ '26. 12. 17.(목)	**우편 또는 방문접수**
입주심사(필요시)	-	별도 공지 * 매수자가 다수이거나 심사 필요시 등
양도대상자 선정통보	매수자 선정 후 1주 이내	별도 공지
매매계약 체결	양도대상자 선정통보 후	양도자-양수자 협의
소유권 이전	양도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양수자 -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에서 신청 (ims.innopolis.or.kr)

* 상기 일정은 입주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 : 2026. 11. 18.(수) ~ 2026. 12. 17.(목)

나.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센터 3층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문의: 063-905-9743)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접수 마감일 업무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서류 일체 제**출 요망**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 접수일 당일 신청 건이 집중될 것을 대비, 사전 접수 요망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ㅇ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_(붙임 3, 4 참고) ㅇ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ㅇ 종람확인서 1부	각 1부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ㅇ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1부 ㅇ 공장등록증명서(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 1부 ㅇ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1~5종) 1부 ㅇ 신기술(NEP,NET), 특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ㅇ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무역협회, 거래은행 발행) 1부 ㅇ 우선 유치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는 입주자격 요건 및 입주제한 요건을 사전에 관련 인·허가권자에 문의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대상자 선정 심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할 수 있음

6. 입주심사

가. 선정방법 : 신청자 입주자격 적격 검토 이후 적격대상이 다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76호)」에 따른 **입주기관심의회의에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에서 적격 검토 후 선정할 수 있음

나. 심의내용 : 입주자격 여부 및 사업계획 평가

* 입주심사 평가기준 : [붙임5] 참조

다. **선 정 일 : 별도 공지**

* 접수마감 결과에 따라,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내용 :** 매수자로 선정된 선순위 기업이 입주계약, 매매계약을 포기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될 경우 후순위를 양도대상자로 선정

7. 매수자 자격상실

(1)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또는 기업체)으로 신청한 경우

8. 유의사항

○ 신청자는 특구재단이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하에 협의·처리하여야 함

○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기업체(처분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

○ 매수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령과 건축 관련 법령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야 함

※ 공고일 이후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신청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함

○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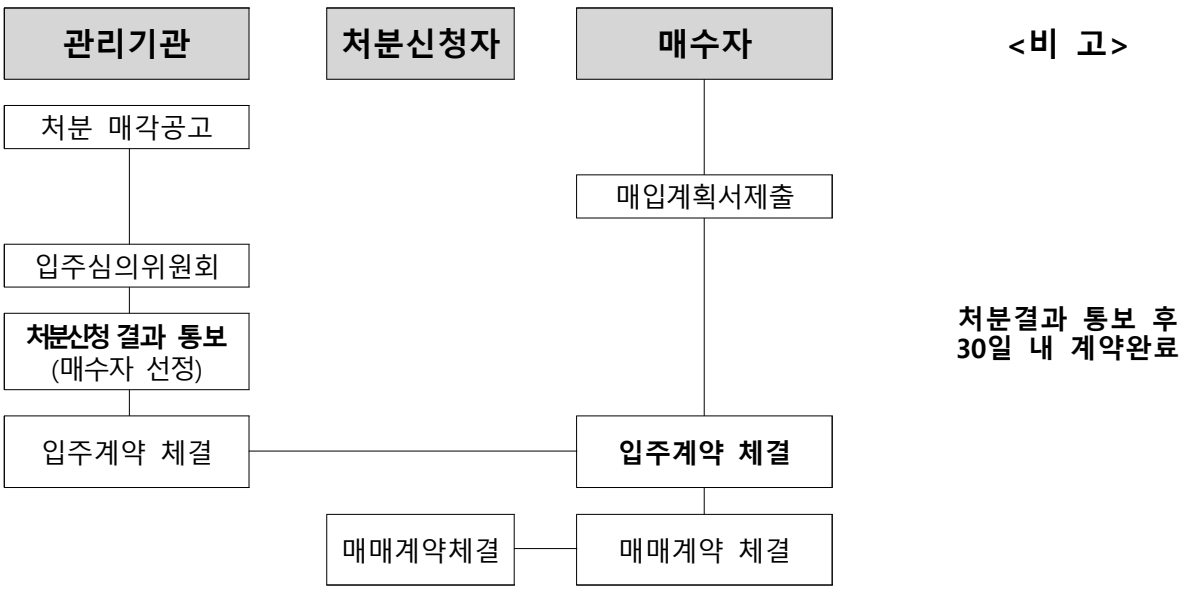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에 따름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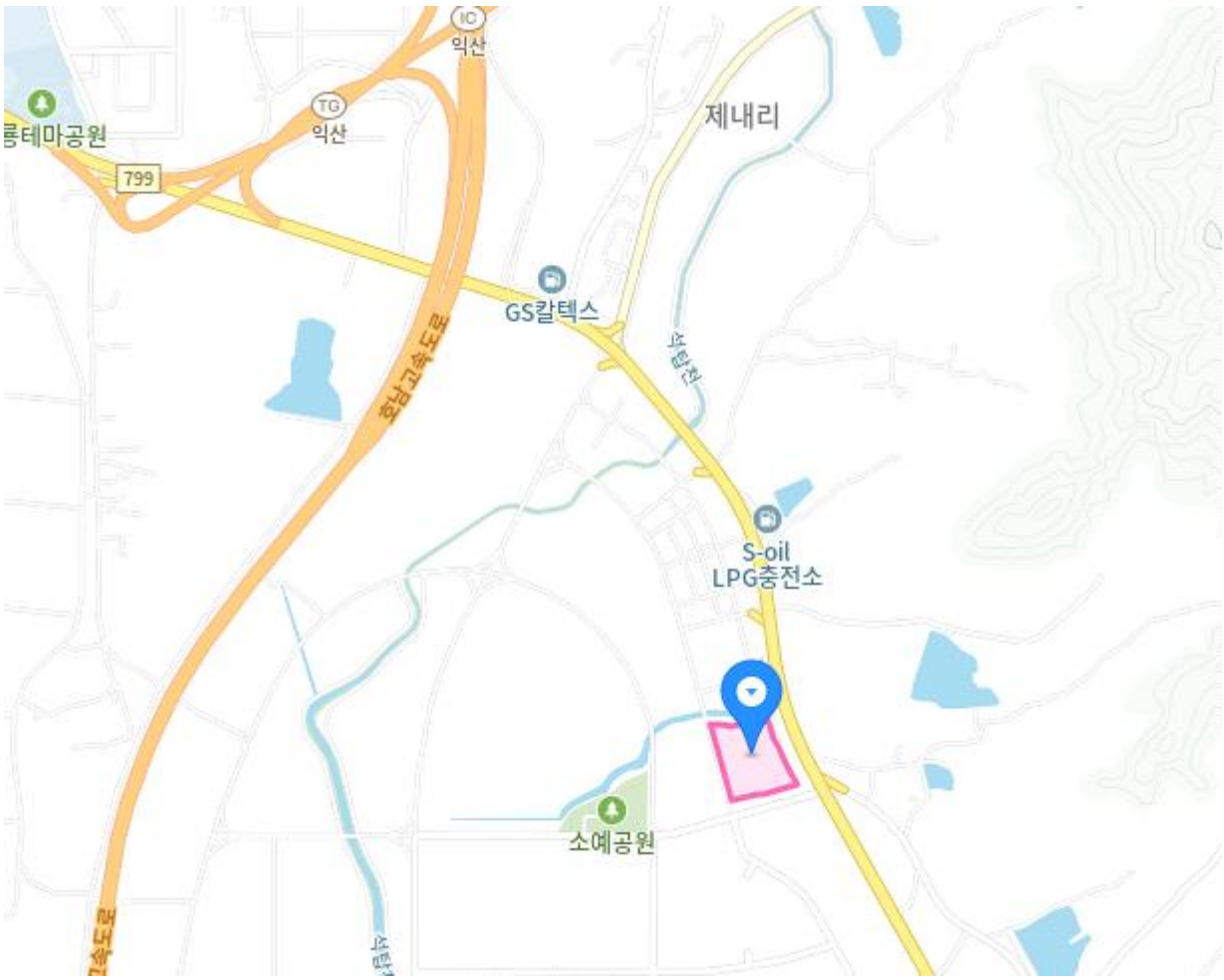
구 분	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
관리 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이규민 연구원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센터 3층 전북특구본부 · ☎ 063-905-9743
처분 신청자	㈜백산 - 대금지불, 계약, 토지 현황, 압류여부 등	·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56, 건영빌딩 6층 · ☎ 031-8084-0714

10. 주요절차



붙임 1. 처분(매각)공고 대상지
2.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3. 입주신청서
4. 사업계획서
5. 입주심사 평가기준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7. 종람 확인서

붙임1. 처분(매각)공고 대상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76-1번지)





붙임2.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 숫자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의미

구 분		완주 테크노밸리 (1단계)
산업육성구역	관련 규정	–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고시 · 전라북도 고시 제 2017-100호(2017. 05. 25.) –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32호(2025.05.16.)
	입주 가능 업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7, 21, 22, 24, 25, 27, 29, 30, 31, 35, 52, 70, 20, 23, 26, 28, 10897, 63*에 해당하는 업종 * 정보서비스업(63)은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78-6번지에 입주한 기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붙임3. 입주신청서

신청번호	2	0	2	6	–			*신청번호는 관리기관에서 작성

전북연구개발특구 완주테크노밸리 1단계 산업시설용지 입주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T : , F :)			
신청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신청지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2로 178(장구리 576-1)			
	신청업종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세세분류5단위기재)	생산제품(연구분야)	
		※ 첨단업종일 경우 표시( )			
	공장건축계획 (단위:㎡)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부대)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존공장	소재지 공 장	(T : , F :)			
	소재지 연 구 소	(T : , F :)			
	입주형태	(분양) (임차) (기타 :)			
	입주업종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세세분류5단위기재)	생산제품	
		※ 첨단업종일 경우 표시( )			
	규 모 (단위:㎡)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부대)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총계	남 / 여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완주테크노밸리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사명(대표자)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입계획서(소정양식)1부 2. 사업자등록 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기타 각종 증빙서류(입주심사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

붙임4.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2. 28.>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 사 명
대 표 자

직인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 설립 형 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 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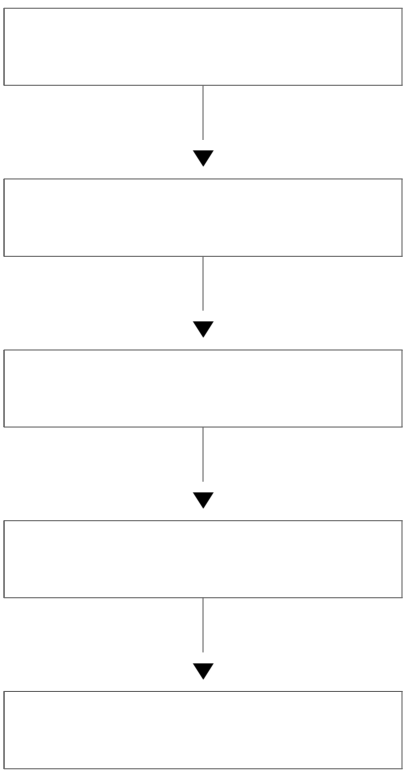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진동(유・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붙임5. 입주심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 요 심 사 내 용
기본 사항	우선유치대상	관리계획상 우선유치 대상 여부
	건축 계획의 타당성	• 착공 및 준공시기와 부지 활용방안 • 건축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건축계획의 적정성 및 주변 부지와의 조화 등 • 기타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및 자금계획	•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 및 안정성 • 건축 진행상의 자금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 부지매입 및 건축 진행상의 자금 조달 능력 및 가능성 등
사업 계획	사업수행 및 향후 파급효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업 성장가능성 및 향후 전망 등 • 기업입주로 인한 기대(파급)효과(성장성, 안정성, 규모지표 등)
	특구조성 목적과의 부합성	•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주변여건 및 환경과의 조화 • 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환경관련 저해요인 저감방안 등 • 첨단산업 및 지식·정보산업 등에 부합하는 쾌적한 산업시설 구축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과 연계성 강화 등 • 산·학·연 주체와의 상호협력 활성화 여건

< 심사 참고사항 : 입주대상기업의 기본점검사항 >

□ 입주자격 및 입주제한 여부

- 산업집적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업종, 건축계획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처리계획

□ 우선 유치 대상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된 기업
-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붙임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입주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업단지 입주관련 신청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회사 및 휴대폰)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시까지

ㅇ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계약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의 일 : 2026. . .

동 의 인 : (서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귀하

붙임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종 람 확 인 서

▢ 확인자

업 체 명 (법인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상기 본인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매수 및 입주하고자 하는 바, 공고내용에 따라 사전에 관리(변경)계획, 산업단지(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부지실태, 임차관계, 도면, 주요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추후 매수한 산업용지에 대한 지질(성토, 지반등) 및 지형(경계선 등)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귀하